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박충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예산과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2020년 7.1%에서 2021년 6.3%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5세 이상 전체 실업률 3.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1]). 그리고 통계청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이동자 비율<sup>1)</sup>은 15~29세가 20.5%로 전체 평균 14.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이처럼 청년의 고용 상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열악하다.

[표 1] 청년 실업률 현황

	(단위: %)		
	2019	2020	2021
15세 이상 전체	3.8	4.0	3.7
15~34세	7.1	7.1	6.3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주제별 통계 > 노동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총괄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1) 전체 등록취업자(사회보험, 국세 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 이동자(이직과 같은 사유로 기준 연도 t의 주된 일자리가 비교연도 t-1과 달라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표 2] 연령별 일자리 이동 현황

	(단위: 천 명, %)		
	등록취업자 수	이동자 수	비중
15세 이상 전체	24,832	3,674	14.8
15~29세	3,888	796	20.5
30~39	5,100	722	14.2
40세 이상	15,844	2,156	13.6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2022. 6. 8.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빈 일자리 수 비율<sup>2)</sup>로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체의 평균 빈 일자리 수 비율은 1.1%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0.3%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난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일정 기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만기 후에 노동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의

2) 전체 종사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 비율을 말한다.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2023년부터는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 될 예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 사업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 도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주요내용과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 2 내일채움공제의 주요내용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 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조항(제35조의 2)을 신설하였다. 중소기업이 지정한 핵심인력과 해당 기업이 정해진 기간(60개월 이상) 동안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만기에 이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에 이 공제사업을 ‘내일채움공제’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제규정 제23조에 따라 공제부금은 중소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을 합산하여 월 34만원 이상으로 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월 기여금은 핵심인력의 월 공제납입금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력법 제35조의3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계약자가 납부할 공제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는 이를 계약자의 공제부금 납입금에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다만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비용 인정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30,729개 기업과 79,449명의 노동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 가입 후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노동자는 27,960명(해지율 35%)이고,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9,528명의 노동자가 5년 만기로 공제금을 받았다.

[표 3]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도해지, 만기 수령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업	801	3,391	2,707	3,521	5,075
노동자	2,100	8,023	7,071	9,619	11,841
해지자	27	814	2,272	3,017	4,136
만기 수령자	-	-	-	-	-
연도	2019	2020	2021	2022. 8.	계
기업	3,363	4,307	4,311	3,253	30,729
노동자	8,856	10,929	11,598	8,412	79,449
해지자	4,660	4,766	4,815	3,453	27,960
만기 수령자	814	2,965	3,027	2,722	9,52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2022. 10. 5.

## 3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sup>3)</sup>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정하고 있는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sup>4)</sup>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인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청년창업기업 등은 피보험자가 5명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

3)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인력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 등에 마련되어 있다.

4)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이와 같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sup>5)</sup> 한편,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업 기여금을 차등 지원한다.<sup>6)</sup> 이처럼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적립금은 청년, 기업, 정부가 1:1:2의 비율로 마련하는데, 기업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정부가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는 1,200만 원 중에서 750~900만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125,113개 기업과 561,494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 이 중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청년은 157,856명으로 해지율은 28.1%에 달하고,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17,097명의 청년이 3년 또는 2년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받았다.

[표 4]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해지, 만기 수령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2016	2017	2018	2019
기업	2,788	18,268	45,703	49,764
청년	5,217	40,170	106,402	98,572
해지자	2,131	13,950	35,561	33,811
만기 수령자	-	-	637	21,864
연도	2020	2021	2022. 8.	계
기업	54,793	51,162	29,503	125,113
청년	137,226	119,783	54,124	561,494
해지자	40,593	29,774	2,036	157,856
만기 수령자	54,178	56,386	84,032	217,097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022. 10. 4.

##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형(3천만 원)도 운영했는데, 2021년부터는 2년형만 운영하고 있다.
- 2021년까지는 정부가 기업 기여금 전액을 지원했었는데, 2022년부터 30명 미만 기업에는 기여금 전액(300만 원), 30명 이상 49명 이하 기업에는 80%(240만 원), 50명 이상 199명 이하 기업에는 50%(150만 원)를 지원하고, 200인 이상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인력법을 개정하여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채용 시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청년근로자'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하였다.

공제규정 제31조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재직자가 5년 동안 720만 원(월 12만 원), 중소기업이 1,200만 원(월 2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7회에 걸쳐 모두 1,080만 원을 적립하여 5년 후 3천만 원의 공제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52,883개 기업과 156,804명의 청년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고, 이 중 29.5%에 해당하는 46,270명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

[표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중도해지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2018	2019	2020
가입 기업	13,310	12,742	11,098
가입 청년	36,031	37,358	32,087
해지자	298	6,936	11,381
연도	2021	2022. 8.	계
가입 기업	9,578	6,155	52,883
가입 청년	30,422	20,906	156,804
해지자	15,505	12,150	46,27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2022. 10. 5.

## 5 개선과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2018년 3월 15일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부 과제 중의 하나로 시행되었는데, 도입

당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2년에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금 2,840억 원을 2022년 예산에 편성하였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90억 원이 감액되어 실제 예산은 2,750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2022년 8월 현재까지 모두 20,906명의 청년재직자가 공제에 새로 가입하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시행된 지만 4년 만에 13만 6천 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공제계약 해지율이 29.5%에 달하지만, 해지의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청년재직자가 자발적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제에 가입한 청년 중에서 최소 5년을 중소기업에 재직할 의사가 있는 비율은 7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3만 4천 명 이상의 청년노동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의 장기재직 성과<sup>7)</sup>를 고려하여 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4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기업, 정부가 각 600만 원씩 적립하여 3년 후에 1,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도 164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신규 가입 대상도 1만 명으로 제한된다.<sup>8)</sup>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기업이나 청년재직자의 가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신규 가입 대상을 1만 명으로 축소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청년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만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규모 또는 공제가입 청년재직자 수에 따라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 수에 비례하여 정부 적립금을 차등 지원하면, 가입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공제가입 대상 청년재직자의 급여 상한 기준(월 급여 총액 300만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7)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미가입자의 25.4개월보다 27.9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18년 897억 원에서 2021년 3,134억 원으로 증가했고,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한 2022년에도 2,750억 원에 달했다.

